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다급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다급, 방송음향운영·관리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7월 19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

□ 임용분야

임용분야	임용직급	근무부서	인원	직무내용
방송음향 운영·관리	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	강남구의회 사무국 (의정팀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의회 방송시설 설치·운영 및 관리 총괄· 의회 회의 생방송 송출 시스템 운영 및 영상 홈페이지 업로드· 의회 구내방송 운영 및 관리· 의회 방송장비, 회의실장비·비품 관리 운영· CCTV, 영상장비, 음향장비, 기타 전기시설물 등 전문장비 관리· 기타 방송 음향 전산 업무에 해당되는 직무

○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~ 2026. 2. 28.

※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□ 시험일정(안)

원서접수	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차 면접시험	면접합격자발표	임용예정일
'24.7.31.(수) ~ 8.2.(금)	'24.8.7.(수)예정	'24.8.12.(월)예정	'24.8.13.(화)예정	'24.8.26.(월) 변동가능성 있음

※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,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

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2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 응시 자격요건

- 공통 응시 자격요건**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 -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 - 연 령 : 20세 이상인 자

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**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○ 자격기준(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)

구 분	자 격 요 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1.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관련분야 경력 요건(아래의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구 분	경 력 요 건
관련분야 경력요건 및 증빙서류	○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법인 및 단체에서 <u>방송·음향시설 운영·관리에</u> 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○ 민간기관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○ 경력증명서 발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
 한하여 인정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※ 직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(면접)예정일 기준으로 함

※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
 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으로 보완 가능하며, 이때 검증을 위해 ‘폐업사실확인서’,
 ‘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’ 중 1종과 ‘소득금액증명서’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
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근무조건

○ 근무시간 : 1일 7시간, 주 5일 근무(주35시간 근무)

○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□ 보수 및 수당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 **하한액 책정을 원칙**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.
- **예상연봉액 : 41,263천원(월3,439천원) + 기타수당**
- 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 시험방법

□ 1차 서류전형(자격요건, 경력사항 등 심사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□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방 법 :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 - ※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 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,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

임용 자격이 부여됨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합격자 개별통보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

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7.31.(수) ~ 8.2.(금) 18:00까지 / (3일간)
- 접수장소 :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(3층)/강남구 대치동 소재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☞ 등기우편 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의정팀으로 연락 바람
(분실우려)
 - 접수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- 평일 근무시간인 10:00~18:00 내에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 - ※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불가
 - 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.(우편접수시 사전에 연락바람)

▷ 주 소 : 우)062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4, 3층 의회사무국 의정팀(강남구의회, 대치동)

▷ 우편 접수자는 휴대폰 SMS로 접수현황을 통보할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(☎02-3423-8103)

▷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(현금×)

□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- 응시원서 1부
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(3×4cm) 1매 이메일 제출(ks0329@gangnam.go.kr)
 - 응시수수료 : 강남구 수입증지 **7,000원**
 - ※ 강남구청 민원여권과(본관 1층)에서 근무 시간 내(09:00~18:00) 인증기 날인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

- ※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,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○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
○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※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고,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**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**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(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·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. 다만,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)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c.or.kr> 발급) 반드시 첨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

○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에 대한 사전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학력·경력·자격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접수시간은 평일 10:00~18:00 (토요일,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)에 한정합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(이메일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)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,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(단, 재공고의 경우 예외)
- 면접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, 채용(예비)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-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(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)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채용 관련문의 : 02-3423-8103)